취창업지원팀

창업대체학점제 신청 안내

취창업지원팀에서는 『학칙』제39조 제7항 및 『창업대체학점제 운영 시행세칙』(2022.7.18. 제4차 교무위원회 통과)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대체학점제 신청을 안내하오니, 각 학과(전공)에서는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창업대체학점제 개요

교과목명	신청학기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
창업실습 I	1학기	3학점	창업동아리	15주 80시간 이상	
창업실습Ⅱ	2학기	3학점	활동	15주 80시간 이상	P/NP
창업현장실습 I	1학기	15학점	창업 후	15주 600시간 이상	(전공선택)
창업현장실습Ⅱ	2학기	15학점	창업활동	15주 600시간 이상	

2. 교과목 신청 자격요건

가. 자격요건 개요

교과목명	자격요건
창업실습	 취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신청 당해학기에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신청 예정인 자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이거나 또는 창업동아리 가입 예정인 자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창업현장실습	1. 취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신청 당해학기에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신청 예정인 자 2.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등기상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자 3. 3학년 이상 재학생이고,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 나. 취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은 과목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벤처, 기술사업화,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외 창업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취창업지원팀으로 문의
- 다.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등기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취창업지원팀과 협의 가능

3. 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4. 2. 1.(목) ~ 2. 16.(금) 15:00까지

나. 제출처 : 취창업지원팀(화랑관 1층 107호)

다. 제출서류(붙임 1.~3. 참조)

교과목명	제출서류 목록			
창업실습	1. 창업대체학점제 교육과정신청서(제1호 서식) 2. 창업동아리 등록 신청서(제2호 서식) 3. 성적증명서 혹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목록(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창업현장실습	1. 창업대체학점제 교육과정신청서(제1호 서식) 2.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제3호 서식) 3. 성적증명서 혹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목록(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라. 문의

- 1) 취창업지원팀(☎ 999-6349)
- 2) 카카오 채널 <신라대학교창업교육센터>를 검색하여 채팅방에 문의 가능

4. 수강신청

- 가. 수강신청은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취창업지원팀에서 승인을 거친 학생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교육지원처를 통해 처리함
- 나. 취창업지원팀의 승인을 얻지 못한 학생은 개강 후 최종 수강정정 기간(3.4~3.8)에 다른 과목의 수 강을 신청하여야 함
- 다. 창업현장실습(15학점)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진로지도, 교양·자유선택 사이버수업 등을 신청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 가. 창업대체학점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당 4회(월 1회)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함(지도교수 선정에 애로가 있을 경우 취창업지원팀으로 문의)
- 나. 실습생은 실습종료 2주 이내에 창업교과 주별 수행보고서, 창업교과 월별 수행보고서, 창업교과 최종결과보고서 및 실습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제품, 대내외 입상실적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 하여야 함
- 다. 학점인정 여부는 실습생이 제출한 서류 및 지도교수 평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성공 취·창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 라. 입학하고 2023-2학기까지 창업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은 받은 학생 중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마.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I , 창업실습 Π)은 전체학기 중 총 6학점까지만 받을 수 있음
- 붙임 1. 창업대체학점제 교육과정신청서(제1호 서식) 1부.
 - 2. 창업동아리 등록 신청서(제2호 서식) 1부.
 - 3.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제3호 서식) 1부. 끝.